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옥재은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기부채납 형태의 다양한 공공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성비용 예치대상을 일반 기반시설로 확대하고, 실질적 집행 주체가 조성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조성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정비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, 예치기관을 구금고 뿐 아니라,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